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12. 20.(수) 10: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4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4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잠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본 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과방위원들이 오늘 항의방문을 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 항의방문인 셈인데 방송 현안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늘 주장해 왔습니다만 공영방송 KBS, MBC 이사들의 해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분이 불합리하고 무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제가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과방위원들 역시 그런 주장을 하고 강력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내용은 들으신 대로 KBS, MBC 이사들의 해임이 부당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펴왔던 논리와 다름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원이고, 또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되어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1과제로 방송 현안 처리가 부당함을 그렇게 항의하러 온 만큼 국민 대표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KBS, MBC의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의 해임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한에 마치 쫓기는 듯이 연내에 처리해야겠다는 일정을 갖고 있었다면 신중하게 재고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제 주장과 또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와서 항의한 내용을 잘 숙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 거듭 무리하게 강행처리가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는 그 사이 여러 차례, 특히 KBS, MBC 이사들 문제들과 관련해서 선례가 되는 것을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면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제1야당의 원내대표단의 항의방문이 있었고, 또 실제 이 사안들은 저희들이 시간을 좀 더 갖고 면밀하게 더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KBS 이사 같은 경우 청문 연기를 요청해 온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위원장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정을 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건을 다룸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사회의 상식이라는 측면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하고, 아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우리가 연내에 마치 시간에 쫓겨서 한다는 인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조금 더 이 건을 다룸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배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세 차례 방문인데 그만큼 방송의 정상화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을 끄는 사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안과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은 이미 사임을 한 MBC 방문진 이사의 후속 인선에 관련된 건이었고, 이번은 결국 이사의 해임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감사원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한 달 이내로 감사원에서 기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해진 법적 기한 내에 행정처리를 하려는 것이지, 주어진 일정에 쫓겨서 연내에 꼭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공식적인 우려, 또 사안을 깊이 있게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한 만큼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원에서 요청한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다시 한 번 보고 일정을 조정하는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늘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처리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항의하고 어떤 결정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그것의 처리방향,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시고 그것이 업무에 반영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는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부가 국회의 감시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회 출석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부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방통위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심의 과정에 있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물론 야당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잦은 항의방문 이러한 것들이 선례가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들이 만약에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것과 무관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부의 권한과 그 업무절차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따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마 원칙적으로는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이야기지요. 우리 위원회는 분명히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또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외부에서 제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제1야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또 받아들일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자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는 일정과 절차를 신중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7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7-47-287)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7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 의결한다.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5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31일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재허가 신청 법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는 표철수 상임위원님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분야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였고, 운영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상세한 평가점수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입니다.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방송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밀착형 매체로서의 역할은 물론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공익성 실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만 재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과 인력 운영 등 측면에서 조건을 부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교육 지원, 운영비의 직접 지원이 아닌 특정 콘텐츠 혹은 서비스 개발을 위한 목적별 지원, 출력 증강 및 신규 허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다만 혼신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등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 부관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허가 여부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른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50점 이상 평가된 7개 방송사업자 7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허가 조건입니다. <1> 재허가 기간 중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계획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2> 청취자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방송운업을 위해 1일 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할 것, <3>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금지할 것, <4>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정하는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의거 방송통신기능사 또는 무선설비기능사를 1인 이상 배치할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5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6>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7>번부터 <10>번까지의 조건은 개별 방송사들에 부과되는 조건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입니다. <1> 방송심의 규정 준수 및 방송사고 예방 등을 위한 체계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번부터 <4>번까지는 개별 방송국에 대한 권고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12월 중으로 방송국 허가증 교부, 재허가 심사결과 및 청취자 의견 반영여부를 공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반영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되, 시간관계상 압축해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표철수 위원님께서 심사를 아주 꼼꼼히 잘 챙겨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보면 2018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마련해서 확정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부터 마련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번 발표한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도 포함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라디오 측,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당겨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기에서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한 번쯤 활성화 계획에 대해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검토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최대한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저도 심사를 위해 애쓰신 표철수 위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체라디오는 참여정부 시절에 소출력 지역밀착형 FM라디오방송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습니다. 출력이 1W에 불과해서 기초자치구의 생활권역도 커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매체로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송 정책이 TV 플랫폼 확장에 중점을 두어서 라디오방송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위원들이 공동체라디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발성과 참여에 기초를 두어 제3의 영역에서 공적기여를 발생시키는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 개발을 위한 목적별 지원, 출력 증강 및 신규 허가 등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저는 이런 정책 건의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여민주주의의 질적인 도약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동체라디오를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원론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공동체라디오가 제3 섹터에 해당하는 시민 영역의 미디어이고,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송매체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서도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내년 하반기 그리고 좀 더 일찍 제대로 된 활성화 정책이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 위원님이 심사를 맡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2004년도 舊 방송위원회에서 시범 사업자로 허가한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방송국 재정 등 운영상황은 오히려 더욱 열악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처에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밀착형 미디어로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신규 허가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7-47-288)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조건에 아래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입니다. 권고사항은 <1> (주)씨제이헬로 영서방송은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씨제이헬로 영서방송은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 1>은 2016년 11월 재허가 때부터 SO 전체에 부가하였고, <권고사항 2>는 (주)씨제이헬로 계열 SO에게 공통으로 부과되어 온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씨제이헬로 영서방송의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자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 법률, 회계분야 등 외부전문가 3인으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기정통부의 심사의견서, 사업자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주)씨제이헬로 영서방송에 과기정통부가 부가한 <붙임 2>의 재허가 조건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16년 11월 재허가부터 전체 SO 및 (주)씨제이헬로 계열 SO에 부가한 권고사항은 공통적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의견은 약식심사위의 의견제시 내용,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붙임 2>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씨제이헬로 영서방송의 재허가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건 (2017-47-289)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5년에서 2017년 시행 「제1차 지원계획」에 이어 2018년부터 2020년 시행 「제2차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 7월부터 9월까지 제2차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서 총 1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7년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지원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17년 12월 14일 제2차 지원계획(안)에 대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차 지원계획의 비전은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 목표는 <1>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유통역량 강화로 지역성 구현, <2> 지역 언론매체로서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익 향상 도모, <3> 지역방송의 자율·투명 경영체계 마련으로 지속가능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강화입니다. 많은 방송사의 다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식에서 소수의 우수 프로그램 집중 지원 방식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고,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현재 지원액 기준 40%에서 지원액 기준 60%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유도하겠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방송사의 신규 장르 및 주제 발굴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SNS, 인터넷 포털, 모바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방송사의 뉴미디어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고, 시청자 호응도가 높은 주제에 특화된 모바일·온라인 채널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전용 OTT채널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중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해외 피칭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국내·외 콘텐츠마켓에 참여함으로써 중장기 콘텐츠 유통 네트워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3-1> 지역방송 지역성 강화입니다. ‘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성 지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의 평가제도 시행 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방송에 대한 학술연구·조사를 통해 실증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방송사의 인적 자원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분야별로 정규과정을 세분화하고 방송사별 맞춤형 특별과정을

개설하며, 단기 해외 방송전문교육과정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방송사가 뉴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교육도 함께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협찬규제 개선은 지역방송사에 대하여 협찬고지 횟수, 시간, 방법 등의 형식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시행령 및 협찬고지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여 기본원칙과 필수적인 금지의무 등을 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합판매제도 및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을 위해 결합판매 지원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방송사 대상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정비하고, 지역민방과 SBS 간 지역별 시장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시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및 투명경영을 위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경영 자율성 및 투명성 보장 관련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제작 투자 확대 유도입니다. 지역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시 전체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 함으로써 자발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UHD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부문을 신설하여 지역방송사와 매칭으로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UHD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도 장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선정 시 순수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은 방송사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자체제작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2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을 주관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뉴스나 재난정보, 지역 현안과 또한 지역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언론 매체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의 경제주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미디어의 등장과 방송광고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서 지역 방송이 존립 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제1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지역방송의 위기론은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제2차 지원계획은 1차 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계속 수행과 확대 과제를 선별하고 동시에 신규 수행 과제를 발굴해서 5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무엇보다 실천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예산지원이 충분치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내년 예산으로 4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작년 보다 1억원 가량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2차 지원계획의 시행으로 지역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역방송 으로서 그 공적책무를 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처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부위원장님께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총평을 다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 한두 가지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방송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원계획이 만들어졌지만 1차에 의해서 이번에 2차 3년치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 부문인데 지역방송이 가장 어려운 것이 편성규제입니다. 편성비율을 보면 대개 서울본사 수준에 프로그램이 많이 방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차 민방에 따라 조금씩 편성비율이 다릅니다. 이것을 자체편성비율로 우리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체제작을 하지 않고 외주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또 구매프로그램으로 많이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돈 문제지요. 그래서 역시 2차 지원계획에도 이 부분을 넣어서 이제는 자체편성비율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제작을 할 수 있도록 편성비율을 규제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앞으로 정해 나갈 것이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문제입니다. 광고 문제 방송정책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처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결합판매 제도 또 전파료 배분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지역민방들이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관 국장께서는 주문을 못 하겠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광고 쪽에 신경을 써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의해 2차 지원 계획에도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취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처장님 챙겨 주십시오.

○ 조경식 사무처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광고 문제가 절실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역방송은 지역문화,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방송정책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송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또 그로 인한 재원의 한계 문제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사들도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직접지원이나 직원 교육에

대한 직접 지원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웬만한 정책의지를 가지고는 더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지역방송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현장에 가서 보니 방통위가 법적으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지역방송사들이 요구하는 것과의 간극이 큼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방통위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방통위가 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사에 있는 분들께서는 방통위에 모든 것들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기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방송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역방송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결합판매제도와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의 원칙은 잘 세우셨는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디테일하게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원하려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돈은 특히 광고와 직접 관계가 있고 또 전파료와도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 퇴장)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지원계획 수립하시느라고 허 육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상파 전체가 다 그렇고, 특히 지역지상파들은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방송사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많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방송환경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방송사들에게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나누어주기 식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계획에서 제시했듯이 우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오전에 토의하지 못한 나머지 안건은 오늘 오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7분 정회 】

【 16시 02분 속개 】

○ 이효성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선언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연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7-47-290)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창작 분량 최소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방송사·학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17년 11월 15일 고시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를 한데 이어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 명확화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편성고시 제3조제3항 본문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편성고시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제작물로서,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의무로 부과되는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의 정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동조의 단서조항은 제작비 절감을 위해 실사영상으로 애니메이션 분량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편성고시 제3조제3항 본문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창작 분량 최소비율 규정입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고시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로 창작해야 하는 분량이 명시되지 않아, 방송사는 기존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화면을 재활용해 만든 애니메이션도 국내 제작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제작업체는 반대하는 등 의견이 대립되어 신규창작 비율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제작 현실과 신규창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고려하고 학계, 업계, 방송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고시 시행 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6개월의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12월에 관보 게재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안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특별히 없습니다. 지난번 고시개정안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고 행정예고가 끝난 사안이기에 때문에 의결주문대로 정했으면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견 없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5호 마목 1)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기준(안) 고시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반을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7회 운영하였습니다. 연구반은 방송통신, 법률, 경제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업자 의견 수렴은 5회에 걸쳐 했습니다.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2조에서 적용 대상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유료방송, 인터넷전화, 사물인터넷) 등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기준금액을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하고, 적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칙으로 산정하도록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기준금액(안)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15만원 상당, 유료방송의 경우 4만원 상당, 인터넷전화의 경우 2만원 상당,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3만원 상당으로 기준금액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 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사물인터넷서비스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3만원 상당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안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금액 초과 제공 건수와 정도, 이용자 간 차별 여부와 정도,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서비스 구성별 차별 여부와 정도, 가입자 청구별 차별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음성적으로 제공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안 5조에서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을 2년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에서 보고한 이후 행정예고를 20일 이상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자제규제 심사 및 규제개혁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고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미리 논의해 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 이익 제공은 제3기 때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러한 경품이나 상품권, 심지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차별하고 또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3기 위원회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해 온 것이 아닙니까?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현금, 상품권 이런 것들은 결코 공짜가 아니고 요금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용자의 것들을 돌려서,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로 이어지고 또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이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결국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즉,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시장을 주시하고 또 관련 기준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특별히 전문가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고시에서 경품제공 기준으로 제시한 상품들이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 인터넷 전화, 사물인터넷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들이 거의 대부분 결합상품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고시 제정안이 이러한 결합상품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 차별적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용자 보호에 큰 획을 긋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종래에 보면 이런 경품 상한기준을 초과한 경품제공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본 방통위의 제재 안전에 대해 사업자가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래서 법리다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시를 제정해서 운영하면서 유선시장도 단말기유통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예고기간 중에 경품제공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추가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15분 폐회 】